


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

# 펀드세제 개정 취지 및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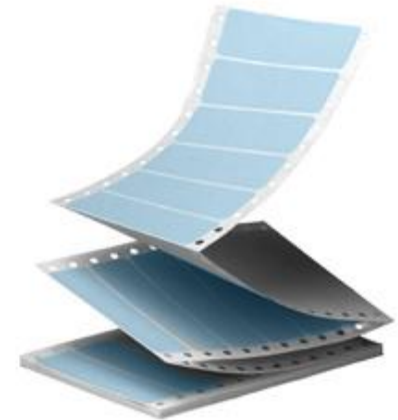
2010.5

본 자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대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 
세제실 및 국세청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.

#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(펀드세제)

## Contents
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정 취지 및 기대효과	3
제1항 결산 시 과세방법	4
제2항 환매 등 과세방법	5
제3항 ETF 등 과세표준 계산 특례	10
제4항 수수료 차감방법	12
제5항 매수원가 및 통산 계산방법	13
제6항 ETF 등 매수원가 산정 특례	19
제7항 유보가능 평가이익 정의	21
제8항 선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의 개념 정의	21
(첨부)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문	



#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정 취지 및 기대효과

펀드산업  
경쟁력 강화

펀드세제 명문화를 통한  
과세 불확실성 제거

- 현행 펀드세제의 소득세법 상 구체화 및 명문화를 통해 과세 불확실성을 제거

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 
펀드세제 합리화

- 결산 시 손실분의 차기이월, 계좌별 손익통산,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

**7월1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시행**

## 조항 규정 취지

현행 “과세표준 기준가격” 명문화 및 결산 시 과세방법 정의, 합리화

## 주요 내용 : 결산 시 과세표준 정의

✓ 국내주식형 ETF\* 및 전액분배투자회사 (매매 시 과세제외 대상)

•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(비과세손익 제외)

\* 국내주식만을 바스켓으로 하는 ETF

✓ 그 외 일반펀드

• 결산 과표기준가격

- 매수시(직전 결산·분배 직후) 과표기준가격

± 직전 결산·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

좌당 배당소득금액(단, 분배금액을 한도로 과세)

부칙 제4조에 따라 7월1일 이후로 결산·분배, 해지, 해산, 매도 및 환매분부터 적용하며 7월1일 전 결산·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은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고려하지 않음 (전 조문 동일)

➤ 결산 시 손실분의 차기이월이 가능

➤ 분배금액 내에서 과세금액이 산정

### 규정 취지

환매 시 과세방법 정의 및 합리화

### 주요 내용 : 환매 시 과세표준 정의

#### ✓ 국내주식형 ETF 및 전액분배투자회사 (매매 시 과세제외 대상)

- 환매 등 (매도 제외) 발생 시점 과표기준가격  
- 직전 결산·분배 직후(또는 최초설정·설립) 과표기준가격\*  
좌당 배당소득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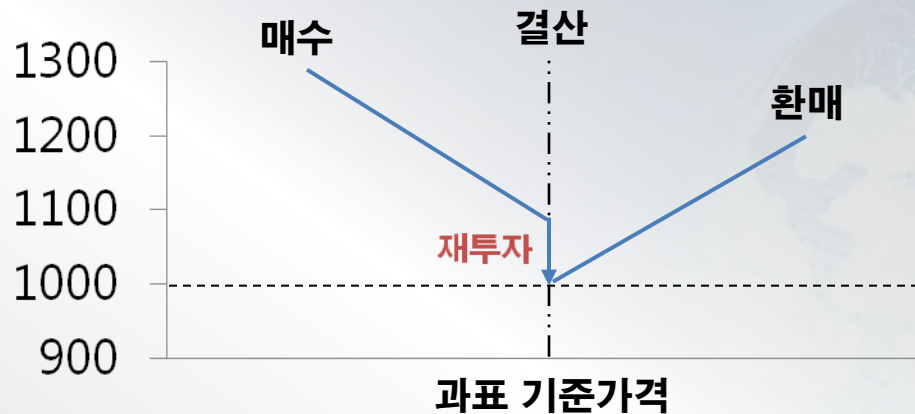
\*부칙 제2조에 따라 ETF에 한해 2010년 7월 1일 이전 매수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시행일인 7월1일로 간주 가능

#### ✓ 그 외 일반펀드

- 환매등 발생 시점 과표기준가격  
- 매수시(직전 결산·분배 직후) 과표기준가격  
± 직전 결산·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  
좌당 배당소득금액

## 적용 사례 1-1 (결산 분배 시 손실분의 차기이월)

- 과표기준가격 = 매수 시 1,300 / 결산 시 1,100 / 환매 시 1,200
- 설명 편의를 위해 기준가격 단위조정은 생략(이하 사례 동일)



### • 환매 시 과세표준

- ✓ 기존 :  $1,200 - 1,000 = 200$  (∵ 결산 시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)
- ✓ 제정 후 :  $1,200 - 1,000 - 200(\text{결산 분배 시 손실분}^*) = 0$   
 \*  $1,100(\text{결산 분배 전 기준가격}) - 1,300(\text{매수 과세기준가격})$

➤ 결산 분배 시 손실분의 차기이월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매 시 세부담이 감소

## 적용 사례 1-2 (결산 분배 시 손실분의 차기이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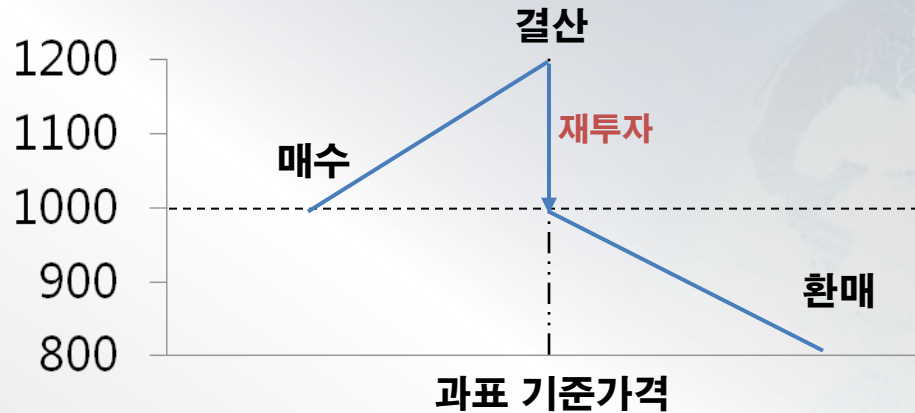
- 과표기준가격 = 매수 시 1,300 / 1차 결산 시 1,100 / 2차 결산 시 1,100 / 환매 시 1,200



- 1차 결산 시점의 과세표준  
 $\checkmark 1,100 - 1,300 = -200 \Rightarrow 0$
- 2차 결산 시점의 과세표준  
 $\checkmark 1,100 - 1,000 - 100(1차 결산 분배 시 손실분) = 0$
- 환매 시점의 과세표준  
 $\checkmark 1,200 - 1,000 - 100(1차 결산 분배 시 손실분) = 100$

### 적용 사례 2 (환매 시 손실분의 소급불가)

- 과표기준가격 = 매수 시 1,000 / 결산 시 1,200 / 환매 시 800



#### • 결산 시 과세표준

✓  $1,200 - 1,000 = 200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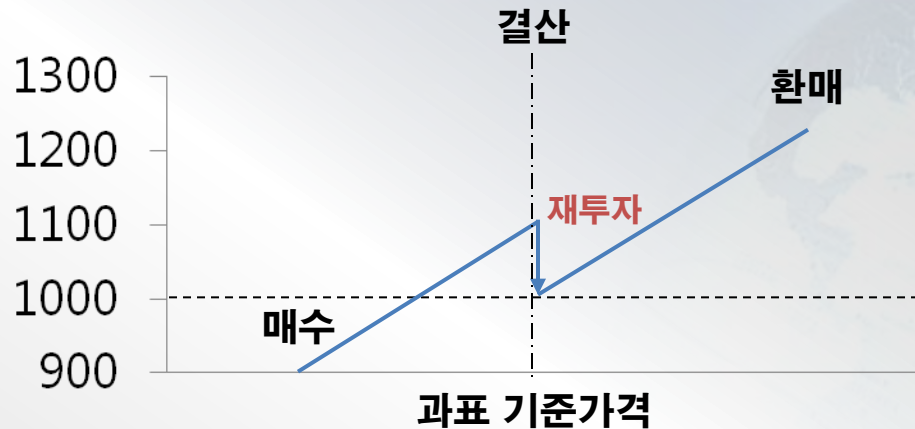
#### • 환매 시 과세표준

✓  $800 - 1,000 = 0$

- 실질적으로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가능하나, 환매 시 발생한 손실을 소급공제하여 기존 확정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은 불가

### 적용 사례 3 (이익 유보 과세)

- 과표기준가격 = 매수 시 900 / 결산 시 1,100 / 환매 시 1,200



#### • 결산 시 과세표준

✓  $\text{Min}(\text{이익 } 200 *, \text{분배액 } 100) = 100$

\* 투자자 이익(과세표준 기준가격 기준)  
:  $1,100 - 900 = 200$



#### • 환매 시 과세표준

✓  $1,200 - 1,000 + 100 (\text{결산시유보과세이익}) = 300$

➤ 이익의 실현시점과 과세시점이 일치

## 규정 취지

매도 시 과세되는 상장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법 정의

## 주요 내용 : 매매 시 과세표준 정의

- ✓ 국내 주식형 ETF(국내주식만을 바스켓으로 하는 ETF) 및 상장된 전액분배투자회사는 매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
- ✓ 기타 상장 집합투자증권(해외주식형, 채권형, 파생상품 ETF, 등 포함)의 매도 시 과세방식

- Min(과표기준가격 차이\*, 실제 매매차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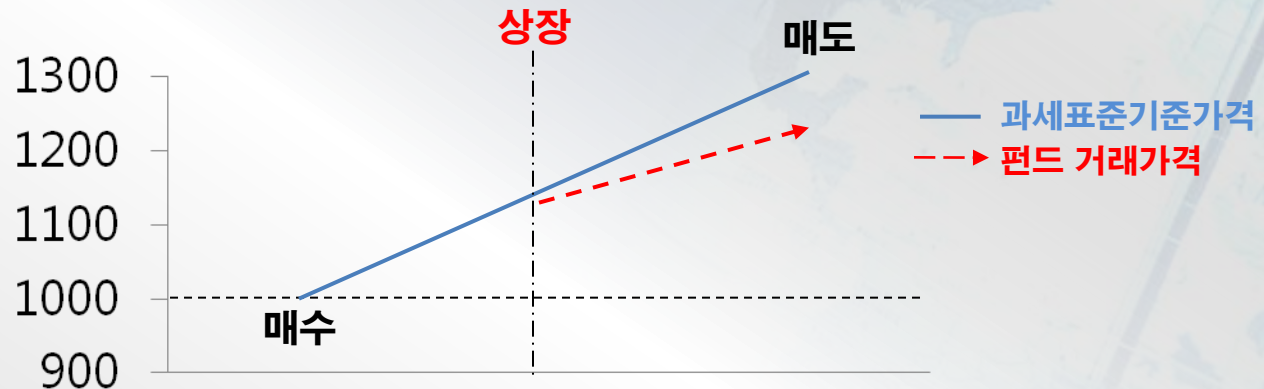
\* 매도 시 과표기준가격 - 매수 시 과표기준가격\*\*

\*\*부칙 제2조에 따라 ETF에 한해 2010년 7월 1일 이전 매수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시행일인 7월1일로 간주 가능

- 실제 매매손실이 발생하나 매도 시의 과표기준가격이 높아 과세되는 부분을 보완

## 적용 사례 (상장집합투자증권의 과세)

- 과표기준가격 = 매수 시 1,000 / 상장 시 1,100 / 매도 시 1,300
- 펀드 거래가격 = 상장 시 1,100 / 매도 시 1,200
- 매수 기준가격 1000



### •매도 시 과세표준

✓  $\text{Min}(\text{과표기준가격 } 300, \text{ 실제 매매차익 } 200) = 200$

\*  $\text{과표기준가격} = 1,300 - 1,000 = 300$

\*\*  $\text{실제매매차익} = 1,200 - 1,000(\text{매수기준가격}) = 200$

## 조항 규정 취지

투자자의 실질소득에 대해 과세되도록 수수료 차감방법을 정의

## 주요 내용 : 수수료 차감방법 정의

✓ **좌당 배당소득 계산 후 수수료 차감**

➢ 건별로 보았을 때 손실이 난 부분의 수수료를 이익발생분에서 공제가 가능

## 적용 사례

A : 1좌 매입,  
기준가격 1,000  
과표기준가격 1,000

B : 1좌 매입,  
기준가격 1,100  
과표기준가격 1,300

전부환매  
기준가격 1,200  
과표기준가격 1,200  
**B 환매수수료 50발생**

4월

7월

10월

✓ 기존 매수건별로 수수료 차감 시 총 과세표준

$$A\text{과세표준}(1,200 - 1,000 = 200) + B\text{과세표준}(1,200 - 1,300 - 50 = 0) = 200$$

✓ 법 상 방법에 따라 좌당 배당소득 계산 후 수수료 차감 시 총 과세표준

좌당 배당소득 :	200(A, 1,200 - 1,000) - 100 (B, 1,200 - 1,300) = 100
- 수수료 :	= 50
<b>총과세표준</b>	<b>50</b>

### 적용 사례(계속)

✓ 투자자의 실제이익 = ① - ② = 250

① 총 수익 (기준가격 차이)

$$A : (1,200 - 1,000) \times 1\text{좌} = 200$$

$$B : (1,200 - 1,100) \times 1\text{좌} = 100$$

---

$$300$$

② 환매수수료 : 50 (집합투자기구로 환입되는 금액)

✓ 원천징수세액(세율은 설명편의를 위해 14%)

$$\text{기준} : 200 \times 14\% = 28$$

$$\text{개정} : 50 \times 14\% = 7$$

✓ 투자자의 세후 이익

$$\text{기준} : 250 - 28 = 222$$

$$\text{개정} : 250 - 7 = 243$$

## 조항 규정 취지

- 관행 상 다양한 매수원가 계산 방법을 통일하여 불확실성 제거
- 매수시점이 2회 이상인 경우 손익 통산을 가능하게 하여,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방법 변경

## 주요 내용 : 과세단위 및 매수원가 계산방법 정의

- ✓ **과세 시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 (손익통산 가능)**
  - 매수시점이 2회 이상인 경우 매수건별이 아닌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
  - 손익통산이 가능해짐
  - 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
  - 손익통산이 가능하며, 세율은 구간별로 적용(사례 참조)
- ✓ **매수원가 계산방법 : 선입선출법** 14
  - 매수시점이 2회 이상인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매수원가 계산
  - 임의적으로 매도분에 대응하는 매수분을 지정하는 지정출금 불가능

### 적용 사례 1 (수회 매수 시 하나의 과세단위로 과세 - 손익통산)

A : 100좌 매입,  
과표기준가격 1,000

B : 100좌 매입,  
과표기준가격 1,300

전부 환매  
과표기준가격 1,100

- ✓ 하나의 과세단위로 과세  
매수건별이 아닌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

#### ➤ 건별로 과세하는 경우

$$\begin{array}{rcl}
 \text{A건 과세표준} & : & 100\text{좌} \times (1,100 - 1,000) = 10,000 \\
 + \text{B건 과세표준} & : & 100\text{좌} \times (1,100 - 1,300) = 0 \\
 \hline
 \text{총 과세표준} & : & 10,000
 \end{array}$$

→ 손익통산 불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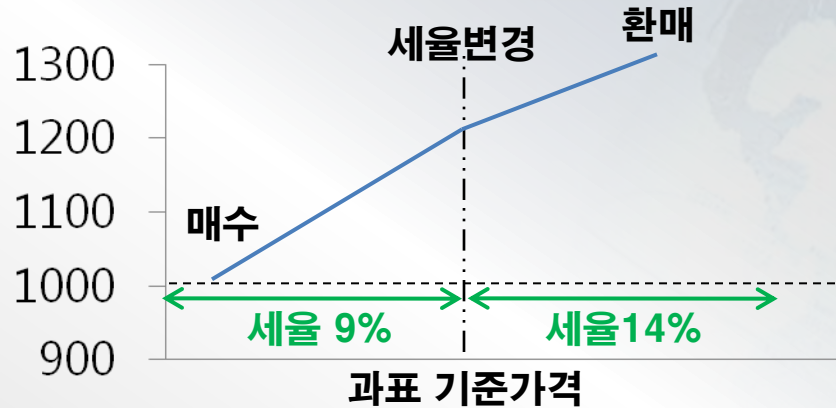
#### ➤ 하나의 과세단위로 과세하는 경우 (개정 방법)

$$\begin{array}{rcl}
 \text{매도가액} & : & 200\text{좌} \times 1,100 = 220,000 \\
 - \text{매수가액} & : & 100\text{좌} \times 1,000 + 100\text{좌} \times 1,300 = 230,000 \\
 \hline
 \text{과세표준} & : & 0
 \end{array}$$

→ 손익통산 가능

### 적용 사례 2-1 (세율 변경 시 과세방법:2개의 과세구간)

- 과표기준가격 = 매수 시 1,000 / 세율변경 시 1,200 / 환매 시 1,300
- 설명편의를 위해 주민세, 농특세 등은 무시함
- 이하 사례(2-1~2-3)는 비과세를 포함한 세율변경 사례 시 동일하게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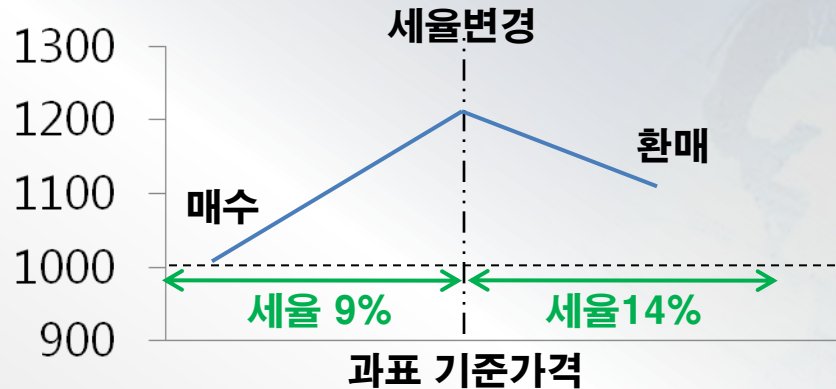


- 9% 과세구간의 손익 +200 / 14% 과세구간의 손익 +100 ⇒ 총손익 +300
- 과세구간별로 이익을 구분하여 세율 적용

9%구간세액:	200(9%이익)	X 9%	= 18
+ 14%구간세액:	100 (14% 이익)	X 14%	= 14
<b>총원천세액 :</b>			<b>32</b>

### 적용 사례 2-2 (세율 변경 시 과세방법:2개의 과세구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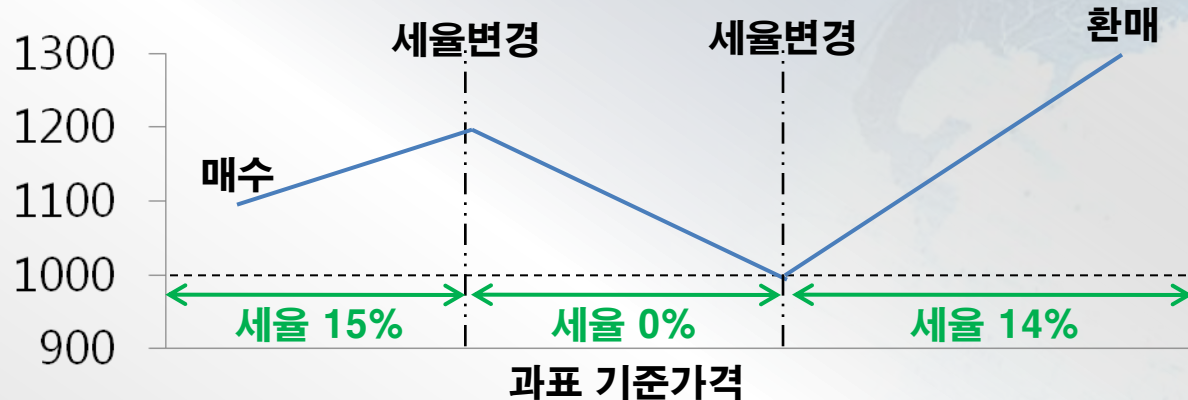
- 과표기준가격 = 매수 시 1,000 / 세율변경 시 1,200 / 환매 시 1,100
- 설명편의를 위해 주민세, 농특세 등은 무시함



- 9% 과세구간의 손익 +200 / 14% 과세구간의 손익 -100 ⇒ 총손익 +100
  - 한 과세구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과 통산한 후 이익이 난 구간의 세율적용
- $\{200(9\% \text{과세구간 이익}) - 100(14\% \text{과세구간 손실})\} \times 9\% (\text{이익 발생 과세구간 세율})$   
 = 9

### 적용 사례 2-3 (세율 변경 시 과세방법:3개의 과세구간)

- 과표기준가격 = 매수 시 1,100 / 1차 세율변경(비과세) 시 1,200 / 2차 세율변경(과세) 시 1,000 / 환매 시 1,300
- 설명편의를 위해 주민세, 가입기간 등은 무시함



- 15% 과세구간의 손익 +100 / 비과세구간의 손익 -200 / 14% 과세구간의 손익 +300  
⇒ 총손익 +200
- 총손익을 이익이 난 구간의 이익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, 세액산출

15%구간세액: 200(총손익) X	$\frac{100 \text{ (15\%이익)}}{400 \text{ (총이익)}}$	X 15% =	7.5
+ 14%구간세액: 200(총손익) X	$\frac{300 \text{ (14\%이익)}}{400 \text{ (총이익)}}$	X 14% =	21

총 원천세액 : 28.5

### 적용 사례 3 (선입선출법으로 매수원가 산정)

A : 100좌 매입,  
과표기준가격 1,000

B : 100좌 매입,  
과표기준가격 1,300

일부환매 (환매좌수는 Case참고)  
과표기준가격 1,100

#### ✓ 매수원가 계산

매입시점이 빠른 A의 매수원가부터 적용

➤ 50좌를 환매한 경우

: 50좌 X 1,000 (A시점 과표기준가격)

➤ 150좌를 환매한 경우

: 100좌 X 1,000 (A시점 과표기준가격) + 50좌 X 1,300(B시점 과표기준가격)

### 조항 규정 취지 및 내용

- ETF의 증권성 및 업권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평균법 매수원가 산정 허용
  - ▶ 매수원가 : 이동평균법에 의한 좌당 매수원가 X 환매좌수
- 여러회에 걸쳐 매도, 소액부징수제도를 활용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당일 매매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과세

### 적용 사례 1 (ETF 등 매수원가 계산)

A : 100좌 매입,  
과표기준가격 1,000

B : 100좌 매입,  
과표기준가격 1,300

150좌 환매  
과표기준가격 1,100

#### ✓ ETF 등 매수원가 계산

##### ▶ 좌당 매수원가

$$\frac{100\text{좌} \times 1,000 \text{ (A시점 과표기준가격)} + 100\text{좌} \times 1,300 \text{ (B시점 과표기준가격)}}{200\text{좌}}$$

$$= 1,150$$

$$\bullet \text{ 매수원가 : } 1,150 \text{ (좌당매수원가)} \times 150\text{좌 (환매좌수)} = 172,500$$

## 적용 사례 2 (당일 매도분 합산과세)



### ✓ 과세표준

#### ➤ 기존

- 각 건별로 볼 때 세액이 1,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과세면제

#### ➤ 당일 매매분 합산과세 시

- 과세표준 :  $(1,600 - 1,000) \times 10\text{좌} \times 20\text{회(합산과세)} = 120,000$   
 →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과세됨

### 제7항 유보가능 평가이익의 정의

#### 조항 규정 취지 및 내용

-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2호나목의 유보가능한  
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에 미수이자, 미수배당금, 미수임대료수입이 포함됨을 명문화

### 제8항 선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의 개념 정의

#### 조항 규정 취지 및 내용

- 제5항 및 제6항의 선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의 개념 명확화



# Q & A

**감사합니다.**